

2021년 제한적 의료기술(국고지원) 신청공고 안내

■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란?

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■ 연구형태 |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

■ 지원 규모 및 시기 | 예산 편성 및 연구 수행에 따라 변동 가능

■ 시술 인정 기간 | 3년 이내(보건복지부 고시 기간 이내)

■ 평가 방법 | 서면 및 대면평가(4월 예정)

■ 신청 · 접수기간 | 2021.2.22.(월) ~ 3.29(월) 15:00 까지

※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 및 안내: 3월 26일(금)까지 가능

■ 신청자격 |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'의료기관'

■ 신청방법 | 온라인 신청

(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→ 평가신청 →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)

<https://nhta.neca.re.kr/nhta/application/nhtaU0502VC.ecg>

■ 대상 의료기술

- ① 갑상선암 수술 환자에서 BRAF 유전자, 돌연변이 검사
- ② 내시경 귀수술
- ③ 뇌실질 종양에서의 BRAF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- ④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[정밀분광/질량분석]
- ⑤ 자기공명/초음파 영상융합장치 유도하 전립선 표적 생검
- ⑥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신장신경차단술
- ⑦ 적혈구 내 6-TGN, 6-MMP 검사 [크로마토그래피-질량분석법]
- ⑧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

관련문의

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

Tel. 02-2174-2729, 2809, 2726